

#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

## I

### 추진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「익산시 자체감사규칙」 제4조(감사의 종류 등) 및 제5조(감사의 범위)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검사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1조(지도·감독 등)

## II

### 감사개요

#### 감사 실시

- 감사기간 : 2022. 9. 19. ~ 9. 30. (10일간)
- 대상시설 :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8개소
- 감사범위 : 2020. 1. 1. ~ 2022. 9.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
- 감사반 : 2개반 (감사계장 외 3명)

#### 감사중점

-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및 목적 외 사용 여부
- 인사 및 복무 적정 관리 여부
- 후원금 사용 및 관리, 보조금 및 각종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
- 물품 및 시설관리,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III

감사결과

일련 번호	제 목	조치사항			관련부서
		행정상	재정상 (천원)	신분상 (명)	
계	총 34건	시정16 주의13 통보 1 권고 2 통보 2	회수5 추급1 세입3 징수1	1건 (○명)	
1	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소홀 ▶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	시정			◆◆복지관
2	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▶ 법인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☆☆☆원 미조치	시정	세입조치 ☆☆☆		
3	자체운영규정 정비 소홀 ▶ 상위법령 및 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수당 규정과 자체운영규정이 불일치함에도 미정비	시정			
4	시설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▶ 시설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시 법령과 복지부 지침에 따른 절차 미이행(공고 등 절차없이 자체처리)	통보			○○○○원
5	취업규칙 미정비 ▶ 배우자 출산휴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	권고			
6	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정 ▶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으로 공사비 집행 (♣♣♣원)한 것에 대하여 정산 미실시	시정	회수 ♣♣♣		
7	비지정후원금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▶ 후원금으로 시설비(리모델링 공사, △건) 집행시 익산시 승인 미이행 ▶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해야 할 후원금을 3년간 해마다 43%이상 적립·이월	주의 · 통보			○○○○원
8	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미확인 ▶ 보육사 등 ●명의 종사자 채용시 범죄경력 확인없이 채용 후 확인	주의			
9	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▶ 2018년부터 회계연도 구분 및 계약기간 없이 용역 계약 체결	주의			
10	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절차 부적정 ▶ 위원 임기만료 2개월 경과 후 위촉의뢰 및 인권보호관 재위촉 절차 미이행	주의			

일련 번호	제 목	조치사항			관련부서
		행정상	재정상 (천원)	신분상 (명)	
11	<b>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</b> ▶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★건 지연보고 ▶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부적정 항목으로 편성 ▶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원천징수 미이행(◇건, ◆◆◆원) ▶ 공사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소홀(세금계산서 등)	시정	징수 ◆◆◆		◆◆ 어린이집
12	<b>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</b> ▶ 시설회계 수입원인 원장에 대한 재정보증 미가입 및 지출원 재정보증보험을 2년 6개월간 미가입	시정			
13	<b>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미확인</b> ▶ 보육교사 ○명 채용시 아동학대 등 경력 확인없이 채용 후 확인	주의			
14	<b>추경예산 편성 보고에 관한 사항</b> ▶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최장 29일까지 지연보고(●건)	주의			♣♣♣♣ 복지센터
15	<b>사회보험료 정산잔액 미반납</b> ▶ 사회보험료 과오납금(♠♠♠원) 정산 미실시	시정	회수 ♠♠♠		
16	<b>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</b> ▶ 시설회계 수입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 미가입	시정			
17	<b>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소홀</b> ▶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분기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미실시	주의			
18	<b>자체운영규정 등 미정비</b> ▶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규정 등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함에도 정비 노력을 소홀히 함	권고			
19	<b>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</b> ▶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후 시설통장으로 반환받은 금액을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보관	시정	회수 ◆◆◆ 세입조치 ●●●		★★★★★ 복지관
20	<b>사회복지시설 인건비(가족수당) 지급 부적정</b> ▶ 종사자 중 부부의 경우 1명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 해야 함에도 2명에게 모두 미지급	시정	추급 ○○○		
21	<b>후원금 이월처리 부적정</b> ▶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해야 할 후원금을 2년간 해마다 48~54% 적립·이월	통보			
22	<b>시설 종사자 성범죄 및 노인학대경력 조회 소홀</b> ▶ 생활지원사 등 ☆명을 채용하기 전 범죄경력 조회를 실 시하지 않고 채용 후 지연실시	주의			
23	<b>안전관리책임관 지정 부적정</b> ▶ 안전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나, 시설관리직원으로 부적정 지정	시정			

일련 번호	제 목	조치사항			관련부서
		행정상	재정상 (천원)	신분상 (명)	
24	인건비 지급기준 규정 정비 소홀 ▶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물리 치료사 등 의료직 급여 지급기준 미정비	시정			♣♣♣♣ 복지관
25	시설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소홀 ▶ 사회복지사 등 ★명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하지 않고 채용 후 지연 실시	주의			
26	기능보강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인 소홀 ▶ 공사(●건) 추진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미검토 및 하자보수보증증권 미징구	시정			
27	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▶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추진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체결	주의			
28	기능보강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▶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부적정 계상한 것에 대한 감액조정 미이행	시정	회수 ◆◆◆		◎◎◎원
29	보조금 전용카드 발생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▶ 카드포인트 등 ◆◆◆원에 대한 조치 미이행	시정	세입조치 ◆◆◆		
30	시설관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▶ 2018년부터 회계연도 구분 및 계약기간 없이 용역 계약 체결	주의			A과
31	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▶ 시설에서 위원 임기 만료전 위촉의뢰 하였으나 위촉통보 미이행	주의		주의○	
32	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서류 확인 소홀 ▶ 보조사업 정산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인 시설에서 셔틀버스 구입하면서 채권매입한 것에 대한 조치 미이행	시정	회수 ♣♣♣		B과
33	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서류 검토 소홀 ▶ 보조사업 정산시 공사비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항목으로 부적정 집행한 것에 대한 조치 미이행	주의			
34	예산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고 소홀 ▶ 2020 예산서, 2021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미실시	주의			C과